

광주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539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모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루츠

담당변호사 장대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형주

변론 종결2021. 5. 6.

판결 선고2021. 6. 10.

주 문

1. 가. 피고와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광주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0. 11. 17.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944,72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2,000,000원을 74,944,722원으로 각 경정한다.
2. 가. 피고와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 F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1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광주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20. 3. 16.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988,43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9,988,434원으로 각 경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치된 H의 관리기관이다.

2) 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냉장, 냉동창고 보관업을 영위하는 어업회사법인이며, 어업회사법인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수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영위하는 어업회사법인이다. 위 각 법인의 대표이사는 I이다.

3) 피고는 2017. 7. 11.부터 2018. 7. 27.까지 F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7. 2. 27. C와 사이에, C가 J은행 양동지점(이하 'J은행'이라 한다)에서 대출할 예정인 2억 7,000만 원에 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금액 2억 2,950만 원, 신용보증 거래기간 2017. 2. 27.부터 2019. 2. 27.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6. 9. C와 사이에, C가 K조합(이하 'K조합'이라 한다)에서 대출할 예정인 2억 6,400만 원에 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금액 2억 2,440만 원, 신용보증 거래기간 2017. 6. 9.부터 2032. 6. 12.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3) C는 2017. 2. 27.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J은행으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2017. 6. 9. 마찬가지로의 방법으로 K조합으로부터 2억 6,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4) C는 위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9. 9. 30. C의 K조합에 대한 채무 184,560,781원을, 2019. 12. 19. C의 J은행에 대한 채무 236,002,94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의 C에 대한 대위변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원고의 C에 대한 대위변제 내역

1	2017. 2. 27.	229,500,000	J은행	270,000,000	2019. 12. 19.	236,002,940
2	2017. 6. 9.	224,400,000	K조합	264,000,000	2019. 9. 30.	184,560,781
합계		453,900,000	534,000,000		420,563,721	

5) 원고는 2019. 11. 26. 광주지방법원에 C에 대한 184,560,781원의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9차전20573), 위 지급명령은 2020. 2. 27.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2020. 1. 10. 광주지방법원에 C에 대한 위 236,002,940원의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원고의 F에 대한 신용보증 및 대위변제

- 1) 원고는 2017. 3. 30. F과 사이에, F이 J은행에서 대출할 예정인 1억 8,600만 원에 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금액 1억 5,810만 원, 신용보증 거래기간 2017. 3.3. 0.부터 2019. 3. 30.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 2) 원고는 2017. 7. 14. F과 사이에, F이 J은행에서 대출할 예정인 3억 8,400만 원에 관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금액 3억 2,640만 원, 신용보증 거래기간 2017. 7.부터 2032. 7.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신용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 3) F은 2017. 3. 28. J은행으로부터 1억 8,600만 원을 대출받고 위와 같이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7. 7. 13. K조합으로부터 3억 8,400만 원을 대출받고 위와 같이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 4) F은 위각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9. 9. 30. F의 K조합에 대한 채무 148,822,473원을, 2019.12.19. F의 J은행에 대한 채무 162,238,594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의 F에 대한 대위변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원고의 F에 대한 대위변제 내역

1	2017. 3. 30.	158,100,000	J은행	186,000,000	2019. 12. 19.	162,238,594
2	2017. 7. 14.	326,400,000	K조합	384,000,000	2019. 9. 30.	148,822,473
합계		484,500,000	570,000,000		311,061,067	

5) 원고는 2019. 11. 15. 광주지방법원에 F에 대한 위 148,822,473원의 구상금 채권을 원인으로 한 지급명령을, 2020. 1. 8. 같은 법원에 F에 대한 위 162,238,594원의 구상금 채권을 원인으로 한 지급명령을 각 신청하였다.

라. C와 F의 자산 현황

1) 2019. 6. 13. 무렵의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C의 재산 내역

적극 재산	1	전라남도 나주시 L 답 1856m ²	161,100,800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124,000,000	
	합계	1,285,100,800	
소극 재산	1	K조합에 대한 채무(표1 제2항의 채무)	264,000,000
2	M은행(광주여신관리단)에 대한 채무(표1 제1항의 채무)	270,000,000	
3	J은행에 대한 채무	208,000,000	
4	M은행(광주여신관리단)에 대한 채무	497,000,000	
5	M은행(광주여신관리단)에 대한 채무	343,000,000	
	합계	1,582,000,000	

2) 2019. 6. 13. 무렵의 F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F의 재산 내역

적극 재산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46,720,000
2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74,048,000	
3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184,317,000	
	합계	305,085,000	

적극 재산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46,720,000
소극 재산	1	K조합에 대한 채무(표2 제2항의 채무)	342,000,000
2	J은행에 대한 채무(표2 제1항의 채무)	186,000,000	
	합계	528,000,000	

마.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 1) C는 2019. 6. 13.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9. 6. 14. 피고에게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I,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2) F은 2019. 6. 13. 피고와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9. 6. 14. 피고에게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I,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의경매 및 배당이의

- 1)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20. 3. 16. 피고에게 19,988,434원을 배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제2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20. 3. 16.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제2배당표의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D, E(중복)호로 부동산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2020. 11. 17. 원고에게 52,000,000원, 피고에게 22,944,72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제1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20. 11. 17.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였으며, 2020. 11. 19.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제1배당표의 배당액의 경정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21. 4. 13. K조합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2021. 4. 27. N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 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C, F에 대한 각 구상금 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의 C, F에 대한 각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하여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C, F의 자산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와 F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무자력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① C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쳐 준 행위, ② F이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쳐준 행위는 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를 포함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 C, F도 자신들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각 2019. 6. 13.자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및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인하여 이미 부족한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어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채무자들의 사해의사가 각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제1,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I과 동업을 하다가 I의 횡령, 기망, 세금포탈 등 행위로 인해 많은 손해를 입었고, I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I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해주겠다고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어서,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외에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명할

것인바, 이미 배당이 종료되어 수익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자로 하여금 배당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채권자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자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당금지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명할 것이나,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수익자의 배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 이외의 다른 채권자의 존재를 고려할 필요

없이 그 채권자의 채권이 만족을 받지 못한 한도에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만

수익자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당해 채권자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① 이 사건 제1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2,944,722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52,000,000원을 74,944,722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제2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988,43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9,988,434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인경

판사차유나

판사오정민

별지